2004년 1차 인천지역 동시분양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는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 인천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무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권 전매금지규정이 적용되며,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분도 1순위 청약(무주택 우선공급 포함)이 제한(2순위로 청약 가능)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02. 9. 3)에 따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산동 벽산블루밍 벽산건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과-2340호 (2004. 2. 1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70-1번지일대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5층 6개동 총 412세대 중 122세대(재건축조합 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층수	층별 구분	분양가격			총분양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 지정일)
	무주택	일반			세대별공급면적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계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전용	주거공용	소계											계약시	2004.4.26	2004.7.22	2004.10.25	2005.1.25	2005.4.25	2005.7.25	2005.10.25	
민영주택	20229-01	20230-01	2004000059 (01)	76.0233	59.2488	16.7745	76.0233	21.7985	97.8218	29.9546	92	15	1, 2층	53,579.618	95,420.382	149,000	149,000	14,900	14,900	14,900	14,900	14,900	14,900	14,900	14,900	29,800
													3층	55,377.592	98,622.408	154,000	154,000	15,400	15,400	15,400	15,400	15,400	15,400	15,400	15,400	30,800
													기준층	57,175.566	101,824.434	159,000	159,0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31,800
	20229-02	20230-02	2004000059 (02)	107.1624	84.3175	22.8449	107.1624	31.0217	138.1841	42.6287	30	15	1, 2층	84,834.655	150,165.345	235,000	235,000	23,500	23,500	23,500	23,500	23,500	23,500	23,500	23,500	47,000
													3층	86,639.648	153,360.352	240,000	240,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48,000
													기준층	89,527.636	158,472.364	248,000	248,000	24,800	24,800	24,800	24,800	24,800	24,800	24,800	24,800	49,600

청천동 세림 미가로아파트 세림종합개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과-2339호 (2004. 2. 1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99-24번지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5층 2개동 총 170세대 중 74세대(재건축조합 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층수	층별 구분	분양가격			총분양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 지정일)
	무주택	일반			세대별공급면적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전용	주거공용	소계											계약시	04.4.12	2004.7.12	2004.11.10	2005.3.10	2005.7.11	2005.11.10	2006.3.10	
민영주택	20231-01	20232-01	2004000060 (01)	79.3383	59.9886	19.3497	79.3383	28.5384 (26.9542)	107.8767	22.4428	15	15	1층	44,674	102,846	147,520	147,520	14,752	14,752	14,752	14,752	14,752	14,752	14,752	14,752	29,504
													2층,피롯티층	45,612	105,008	150,620	150,620	15,062	15,062	15,062	15,062	15,062	15,062	15,062	15,062	30,124
													기준층	47,024	108,256	155,280	155,280	15,528	15,528	15,528	15,528	15,528	15,528	15,528	15,528	31,056
													최상층	45,612	105,008	150,620	150,620	15,062	15,062	15,062	15,062	15,062	15,062	15,062	15,062	30,124
	20231-02	20232-02	2004000060 (02)	105.3374	84.9644	20.3730	105.3374	40.4200 (38.1763)	145.7574	31.7866	46	15	1층	59,752	138,528	198,280	198,280	19,828	19,828	19,828	19,828	19,828	19,828	19,828	19,828	39,656
													2층,피롯티층 상가윗층	61,009	141,441	202,450	202,450	20,245	20,245	20,245	20,245	20,245	20,245	20,245	20,245	40,490
													기준층	62,895	145,815	208,710	208,710	20,871	20,871	20,871	20,871	20,871	20,871	20,871	20,871	41,742
													최상층	61,009	141,441	202,450	202,450	20,245	20,245	20,245	20,245	20,245	20,245	20,245	20,245	40,490
	20231-03	20232-03	2004000060 (03)	107.8823	84.9909	22.8914	107.8823	40.4326 (38.1882)	148.3149	31.7966	13	15	상가윗층	61,634	145,706	207,340	207,340	20,734	20,734	20,734	20,734	20,734	20,734	20,734	20,734	41,468
													기준층	63,542	150,218	213,760	213,760	21,376	21,376	21,376	21,376	21,376	21,376	21,376	21,376	42,752
													최상층	61,634	145,706	207,340	207,340	20,734	20,734	20,734	20,734	20,734	20,734	20,734	20,734	41,468

효성동 아태새별아파트 아태산업개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1951호 (2004. 2. 1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0-3, 60-8번지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3~15층 1개동 총 133세대 중 72세대(재건축조합 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층수	층별 구분	분양가격			총분양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 지정일)
	무주택	일반			세대별공급면적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계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전용	주거공용	소계												2004.6.3	2004.8.3	2004.10.3	2004.12.3	2005.2.3	2005.4.3	
민영주택	20233-01	20234-01	2004000061 (01)	81.35	62.58	18.77	81.35	22.53	103.88	20.85	5	14	4~14층	12,977	129,783	142,760	142,760	28,552	14,276	14,276	14,276	14,276	14,276	14,276	28,552
	20233-02	20234-02	2004000061 (02)	88.18	67.84	20.34	88.18	24.42	112.60	22.60	14	14	4~14층	14,066	144,654	158,720	158,720	31,744	15,872	15,872	15,872	15,872	15,872	15,872	31,744
	20233-03	20234-03	2004000061 (03)	89.87	69.14	20.73	89.87	24.89	114.76	23.03	3	14	4~14층	14,334	146,076	160,410	160,410	32,082	16,041	16,041	16,041	16,041	16,041	16,041	32,082
	20233-04	20234-04	2004000061 (04)	106.39	81.85	24.54	106.39	29.46	135.85	27.27	6	14	4~14층	16,973	174,527	191,500	191,500	38,300	19,150	19,150	19,150	19,150	19,150	19,150	38,300
	20233-05	20234-05	2004000061 (05)	106.77	82.14	24.63	106.77	29.57	136.34	27.36	38	15	1~15층	17,047	175,133	192,180	192,180	38,436	19,218	19,218	19,218	19,218	19,218	19,218	38,436
	20233-06	20234-06	2004000061 (06)	109.72	84.41	25.31	109.72	30.39	140.11	28.12	6	14	4~14층	17,502	179,988	197,490	197,490	39,498	19,749	19,749	19,749	19,749	19,749	19,749	39,498

경서지구 우정에쉐르 우정건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허가과-3135호 (2004. 2. 1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블럭 1,2,3롯트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6~19층 5개동 2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층수	층별 구분	분양가격			총분양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 지정일)
	무주택	일반			세대별공급면적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전용	주거공용	소계												2004.4.15	2004.8.16	2004.12.15	2005.4.15	2005.8.16	2005.12.15	
민영주택	20235-01	20236-01	2004000062 (01)	79.7576	59.6048	20.1528	79.7576	14.5484 (13.0575)	94.3060	38.3858	4	17~19	1층	35,500	78,500	114,000	114,000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34,200
											4		2층		82,500	118,000	118,000	11,800	11,800	11,800	11,800	11,800	11,800	11,800	35,400
											60		기준층		86,500	122,000	122,000	12,200	12,200	12,200	12,200	12,200	12,200	12,200	36,600
											4		최상층		89,500	125,000	125,000	12,500	12,500	12,500	12,500	12,500	12,500	12,500	37,500
	20235-02	20236-02	2004000062 (02)	110.2935	84.6664	25.6271	110.2935	20.6655 (18.5477)	130.9590	54.5255	12	16~19	1층	46,200	117,800	164,000	164,000	16,400	16,400	16,400	16,400	16,400	16,400	16,400	49,200
											12		2층		121,800	168,000	168,000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50,400
											184		기준층		125,800	172,000	172,000	17,200	17,200	17,200	17,200	17,200	17,200	17,200	51,600
											12		최상층		128,800	175,000	175,000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52,5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각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인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각사별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유의사항

- 벽산건설의 경우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및 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함
  -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 동양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토지(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주용 택지를 분양받은 토지 제외)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등을 분양받은 자
  - 부담금의 산정기준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000분의 8
- 세림종합개발의 경우 : - 101동 1호라인 1층, 2층, 102동 1호라인 1층, 2층 및 4호라인 1층, 2층은 피롯티임 - 101동 2호라인 1층, 2층 및 3호라인 1층, 2층은 상가임
  - 101동 3층, 4층은 발코니 앞에 투명방음벽이 설치됨 - 일반분양시설인 복리시설의 대지지분은 507.4㎡임
- 우정건설의 경우 : - 문화재청 매문 86705-2692(2003.10.1)호 및 시 문예 86700-2452(2003.10.10)호와 관련하여 동 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지역으로 현재 지표조사를 종료하였음
  - 경서지구 내 지장물 보상협의(완료) 및 사업부지가 매장문화재발굴(시굴)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이나, 문화재 발견 및 매장가능성이 있을시 사업 중지로 입주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중도금 무이자인 경우에는 중도금 제외)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분양계약서 규정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 입주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함

인터넷·ARS 청약신청서비스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인터넷 · ARS(자동응답전화)청약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구.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폰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서 – 제 1 · 2순위 :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신 분 – 제 3순위 : 국민은행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아파트 분양관 → 인터넷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접속
	전화(ARS)	• ☎ 1588-9999 (서비스 번호 : 702)	• ☎ 1369 (서비스 코드 : 5#)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완료 하신분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등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4. 2. 18)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서울특별시 · 경기도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동시청약을 받는 입주자모집공고분(2004 년 1차 인천지역 동시분양)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한 경우에는 청약모두를 무효 처리함

2)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약관련예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무주택 우선공급	85m²이하	-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함 • 만 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제1순위가 되신 분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없는 분**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2004.2.24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 - 평일 9:30~16:30	•일시 : 2004. 3. 5 (13:00) •장소 : 해당회사 견본주택 •2004. 3. 5 한국경제신문에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85m²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80. 8. 29일 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5. 22일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분** **•2주택 이상을 소유 [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2004.2.25		
	2순위	85m²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2004.2.26		
	3순위	85m²이하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2004.2.27	• 국민은행 본 · 지점 - 평일9:30~16:30	

※ 경과기간 및 요건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함
- 평형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회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평형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평형만 청약신청 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평형만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94. 8. 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접수방법

- 각 공급회사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를 접수치 않음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구분		구비사항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 **(1·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 · 청약부금 통장 (1 ·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사본 1부(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청약 신청금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	• 세대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의 경우 5년이상 세대주기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5년이상 세대주기간 확인이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호적등본 1통(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장애인 수첩 또는 등록증(복지카드) 사본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서약서 (양식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함

구분	민영주택(전용면적)	신청금 납부방법
	85m²이하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능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청약신청금	200만원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2004. 3. 8)이후 평일 09:30 ~16:30
- 환불장소: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계약체결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구분	선정방법
무주택 우선공급	•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해당지역 일반 제1순위자와 함께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공통 (무주택우선 및 일반공급)	• 국민은행 컴퓨터추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동일순위 신청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 경기도지역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 공급회사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각 공급회사 견본주택 등에 별도 공고함

(단위 : 원)

회사명(동명)	벽산건설 (삼산동)	세림종합개발 (청천동)	아태산업개발 (효성동)	우정건설 (경서동)
입주예정일	2005년 12월	2006년 5월	2005년 9월	2006년 6월
감리회사	(주)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	(주)한국환경종합 건축사사무소	(주)태원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주)태원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VAT별도)	338,429,934	242,160,000	183,101,443	333,038,066

- 각사의 연대보증인은 대한주택보증임
- 감리금액은 각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정당당첨자 : 2004. 3. 10 ~ 2004. 3. 12 (3일간, 시간 : 09:3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해당회사 견본주택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구분	구비사항
공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 ARS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생략)**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5년 이내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 및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하고 계약은 취소함
-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가구 · 주방공사, 유리공사, 돌 · 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잡공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개시전 특정일자를 지정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보증의 범위 :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 5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대상 제외사항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 (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말한다]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 공정전에 납부한 입주금
8. 사용검사일 이전에 납부한 잔금.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90%를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13.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4.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5.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 (예시:홈오토, 발코니 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6.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star.com) 부동산 싸이트의 아파트 분양관 메뉴를 선택하시면 청약신청은 물론 각 아파트별 분양정보, 모델하우스 현장중계, 청약접수결과 및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apt2you.com)에서도 자세한 분양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시 홈페이지 이용안내

본 공고는 인천시 홈페이지 (http://www.inpia.net→새소식)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등록자 중 주민등록사항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전산등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 면적(㎡)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아파트분양관 → 경쟁률/ 당첨확인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이용기간	2004. 3. 5 ~ 3. 14	2004. 3. 5 ~ 3. 14
전화 (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 1588-9999 (서비스번호 :704)	☎ 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및 시간	2004. 3. 5 ~ 3. 14 (10일간 07:00 ~ 23:00)	2004. 3. 5 ~ 3. 14
휴대폰 문자 서비스	대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2004. 3. 5(08: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삼산동 벽산블루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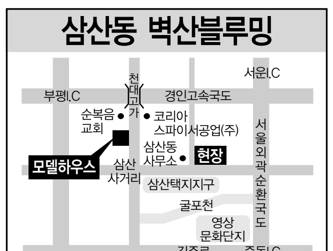

(032)527-5566

시행사:동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천동 세림 미가로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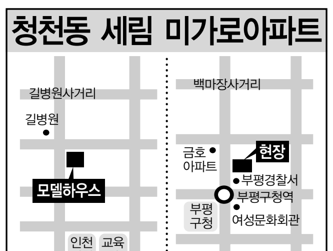

(032)426-7200

시행사:백마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세림종합개발

효성동 아태새별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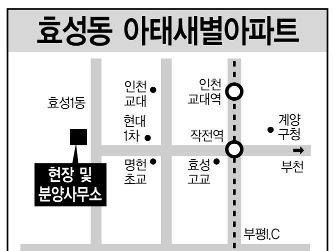

(032)553-0084

시행사:금성연립재건축조합, 아태산업개발(주)

경서지구 우정에쉐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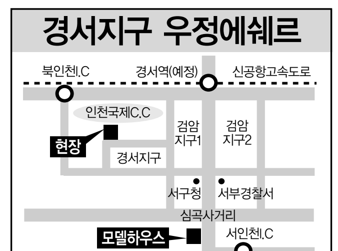

(032)568-0987

시행사 : 우정건설

벽산건설
www.becco.co.kr/www.iblooming.net

(주)세림종합개발

아태산업개발(주)

우정건설
www.woojungapt.co.kr